

#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

인천광역시

#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1055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11. .  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## 1. 제정이유

- 가.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완화
- 나. 농기계의 효율성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, 농가의 농업경영개선,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등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(안 제6조)
- 나. 임대 절차, 기준, 임대료(안 제7조부터 안 제9조)
- 다. 임대료의 감면 및 반환, 임대 계약의 취소(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)
- 라.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(안 제13조)
- 마. 농기계의 반환 및 임대의 제한(안 제14조 및 안 제15조)
- 바. 운영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구성(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)
- 사. 운영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해제(안 제18조 및 안 제19조)
- 아.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(안 제20조 및 안 제21조)
- 자. 비치대장 및 운영세칙(안 제22조 및 안 제23조)

## 3. 참고자료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
- 나. 비용추계서 1부

##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,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농기계임대사업장(이하 “임대사업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.

제4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기계임대사업”(이하 “임대사업”이라 한다)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임대농기계”(이하 “농기계”이라 한다)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·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.
3. “임대료”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·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4. “사용자”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

제5조(기능)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
2.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운영 및 관리)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

③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임대절차) ① 시장은 사용자와 농기계 종류, 기간, 임대료, 조건,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·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.

제8조(임대기준) ① 농기계는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
②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, 농경지는 인천광역시 관내로 한다.

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,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임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(임대료) ① 시장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별표 농기계 임대료 정수기준 범위에서 정하여 매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  
② 농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·징수 한다.  
③ 농기계의 운반비용, 사용 유류비용 및 그 밖의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  
④ 사용자가 임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연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징수한다.

제10조(임대료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1. 반액감면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2. 전액감면: 재해·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임대료의 반환) ①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.  
②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용 전 취소한 경우: 임대료 전액
2. 사용 중 정지한 경우: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: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
4.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:

##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

제12조(임대계약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2.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
3.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사용할 경우

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인적·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)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한다.

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
④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·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14조(농기계의 반환) ①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5조(임대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농기계를 3회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. 다만,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2.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3. 농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

제16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 · 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,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임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

제1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임대사업 업무 담당과장
2. 농업인단체 대표
3. 농기계 및 농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8조(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

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9조(위원의 위촉 해제)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

제2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전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해당 연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22조(비치대장)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. 다만,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농기계 관리대장(별지 제4호 서식)
2. 사용신청대장(별지 제5호 서식)
3. 임대료 수납대장(별지 제6호 서식)

제2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농기계 임대료 정수기준  
(제9조제1항 관련)

구입가격	임대료(원) (1일 1대 기준)	비고
100만원 미만	3,000	
100만원 이상 ~ 400만원 미만	7,000	
400만원 이상 ~ 700만원 미만	16,000	
700만원 이상 ~ 1,000만원 미만	25,000	
1,000만원 이상 ~ 1,300만원 미만	34,000	
1,300만원 이상 ~ 1,600만원 미만	43,000	
1,600만원 이상 ~ 1,900만원 미만	52,000	
1,900만원 이상 ~ 2,200만원 미만	61,000	
2,200만원 이상 ~ 2,500만원 미만	70,000	
2,500만원 이상 ~ 4,000만원 미만	97,000	
4,000만원 이상	120,000	

※ 농기계 임대료 정수 기준표 (구입가격×0.3%기준)

※ 농기계 기종 및 내구연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No. \_\_\_\_\_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

임 대 인	임 차 인		
인천광역시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	
	연락처		이동전화
임 대 차 농 기 계			
농 기 계 명		수 량	대
부속작업기		수 량	대
		수 량	대
임대차기간	년 월 일 ~	년 월 일까지( 일)	
임 대 료		반 납	
농 기 계 사 용 계 획			
기 계 명		작업종류	
작업장소		작업면적	ha(일 m <sup>2</sup> )

-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-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계약 조건을 준수 하겠습니다.

### 계약 조건

1. 사용 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.(1일 이상 사용시)
2. 임대기간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.
3.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.
4. 사용 후 반납 시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.
5. 임대 기간중 농기계의 유지·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(수리비, 연료비, 농작업 상해공제 등)는 임차인이 부담한다.
6. 임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7. 임대기간 중 농업용 외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
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.

접 수		

년 월 일  
임 대 인 : (인)  
임 차 인 : (인)

[별지 제2호 서식]

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

			결 재

신청인	성명		연락처	
	생년월일			
	주소			
	E-mail			
임대기종명	(규격 : ※ 부속작업기(부품))			
임대기간	년 월 일	~	년 월 일 (일간)	
작업면적	ha(논 : )	밭 :	기타 :	
작업내용				
임대료 감면 신청사유				
첨부				

「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」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:  
성명 : (인)

첨부 :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.

인천광역시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

## 농기계 임대료 반환 청구서

			결재

신 청 인	성명		연락처	
	생년월일			
	주소			
	E-mail			
임대기종명	(규격 : ※ 부속작업기(부품))			
기납부액	원			
반환청구액	원			
반환청구사유				
<p>「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」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을 청구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구자 주소 :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 :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년월일 :</p> <p>첨부 : 신분증 사본 1부.</p>				
<p>인천광역시장 귀하</p>				

[별지 제4호 서식]

농기계 관리대장

작성일자 : 년 월 일

기종(제작사)	규격(모델)	기대번호
구입일시	구입가격	내구연수

주요관리내역

일자	주요문제점	조치결과	담당자확인

### [별지 제5호 서식]

## 사용 신청대장

### [별지 제6호 서식]

## 임대료 수납대장

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□ 농업기계화촉진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제3조(농업기계화 촉진의무).</li><li>○ 제8조의2(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)</li></ul></li> <li>□ 지방자치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제22조(조례)</li><li>○ 제136조(사용료)</li><li>○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</li></ul></li></ul> <p>“내용은 별지 작성”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# 관계법령 발췌사항

## □ 농업기계화촉진법

- 제3조(농업기계화 촉진의무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8조의2(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(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(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, 부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6.12>  
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3.6.12>  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,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12.>

## □ 지방자치법

-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.>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### 가. 비용 발생 요인

- 농업기계 임대사업 창고보수 및 장비구입(국50%, 시비50%)
- 농업기계 보관창고 및 종합수리센터 신축비용 (국50%, 시비50%)

### 나. 관련조문

-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(농업기계화 촉진의무) 및 제8조의2(농업 기계 임대사업의 촉진)

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보관창고 보수(2014년), 농기계 구입(2014년~2017년), 보관창고 및 종합수리센터 신축(2016년), 농기계 장비 구입 및 유지비(2017년)  
※ 2013년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

### 나. 추계의 결과

(단위:천원)

구 분	연 도	2014	2015	2016	2017	합계
계		444,000	200,000	1,000,000	400,000	2,044,000
국 비		222,000	100,000	500,000	200,000	1,022,000
지방비		222,000	100,000	500,000	200,000	1,022,000
자부담		0	0	0	0	0

### 다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- 농업기계 보관 창고 및 수리센터 신축비 및 장비구입 국고보조금(국·시비)
-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장비 구입 및 유지비 일부(시비)

### 라. 부대의견 :

### 마. 작성자

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